
20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 지침

2018.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목 차 |||

I. 사업개요	1
II. 아동복지교사 지원대상 기관 관리	4
III. 아동복지교사 관리	12
<서식1>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서식	29
<서식2>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관 심사서식	31
<서식3> 아동복지교사 참여신청서식	34

I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나.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아동복지 서비스 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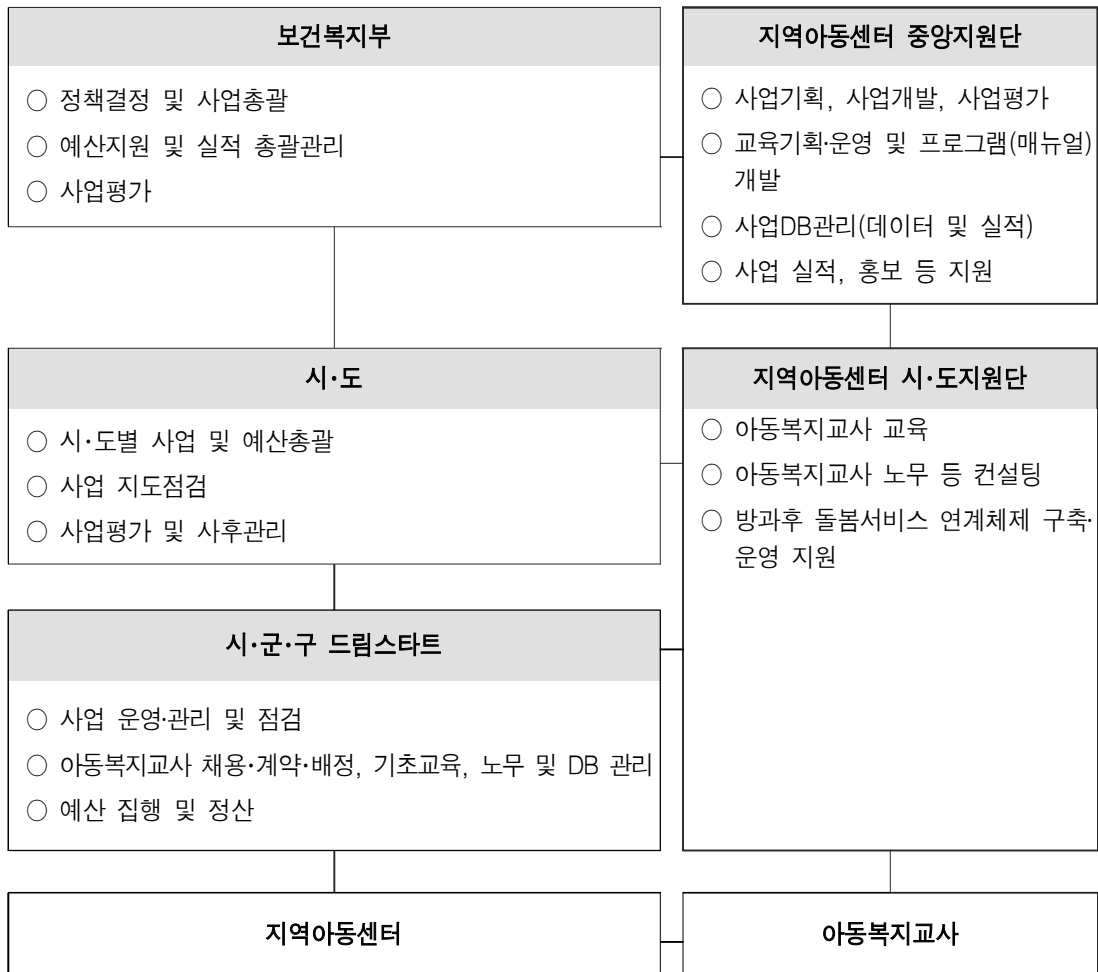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서 취업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사회 우수인력을 채용, 교육훈련을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 인력 양성

2. 사업연혁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시작('07.6월)
 - 기초학습, 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보건위생 등 10개 분야 아동복지교사 2,722명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추진체계 변경('11.12월)
 - 지원대상 기관 수요 파악,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복무관리 등 사업관리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변경
-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아동복지교사 사업량 확대('13.7월)
 - '07년 이래 2,700명으로 유지되었던 사업량을 3,500명으로 확대
- 지역아동센터 3,875개소에 3,547명의 아동복지교사(기본분야) 파견 중('16년말기준)
-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추진 ('17.7.20)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관계부처 합동)

3. 사업추진체계



4. 사업추진일정



추진일정	내용	주체
1~2월	■ 20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침 시행 ■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추진현황 등* 점검 *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여부 등 정규직 전환현황 등 지속 점검 예정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교사* 기초교육(오리엔테이션) * 전일근무(기본·특화분야)·단시간근무 신규교사	시·군·구
2~9월	■ 아동복지교사* 기초교육(온라인) * 전일근무(기본·특화분야), 단시간근무 신규교사 ■ 아동복지교사* 보수교육 * 전일근무(기본·특화분야), 단시간근무 경력교사 ■ 특화분야 교사(지역사회복지사) 사례관리교육 ☞ 세부 교육일정 및 내용 등은 추후 통보	중앙지원단 시도지원단
8~9월	■ 2019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침 개정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8~11월	■ 아동복지교사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보건복지부 중앙지원단
10~12월	■ 2019년 아동복지교사 지원 대상 기관 선정 ■ 2019년 아동복지교사 배치	시·군·구

※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 결원 시 수시 채용 및 배치 가능

II

아동복지교사 지원대상 기관 관리

1. 지원대상 기관 신청



가. 신청자격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설치·신고된 아동복지시설

- 1) 신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 2) 신고필증상 2016년 12월 31일 이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 공립지역아동센터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 3) 법정 종사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아동센터
- 4) 신고필증상 그리고 실제 상시 이용아동이 10명 이상인 지역아동센터
- 5)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 다만, 농산어촌지역 및 취약지역이거나 아동특성상 특별한 지원 사유가 있는 경우 1)~3)의 자격기준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신청서에 필요사유를 반드시 기재)

※ 해당 신청기준은 신청 가능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며, 선정확정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제출서류를 근거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센터를 확정함

나.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신청기간	매년 10월	
심사기간	매년 10월	
결과발표	매년 11월(선정 센터에 한해 지원여부만 통지 후, 최종결과 공지(시군구))	
제출서류	1.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서식 참조 -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를 3개까지 우선순위별로 작성
	2. 신청자격 증빙서류	1) 신고필증(센터위치, 신고시점, 법정종사자수, 아동 수 확인) 2) 종사자명부 및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법정종사자 인력 확인) 3) 신청시점 직전 3개월간 아동 출석부 및 급식명단(아동 수 확인) 4) 신청시점 직전 3개월간 프로그램 시간표 및 운영시간 증빙자료 등

		* 시·군·구내에서 관련 시스템 및 점검자료 등으로 증빙서류를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기관에 증빙서류 제출요청을 생략할 수 있음 ※ 2)~3)번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부분은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 후 제출 ※ 증빙서류에 대해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가능
	3. 기타서류	기타 심사과정에서 시·군·구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접수처	관할 시·군·구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	
유의사항	1. 신청일정, 세부절차 및 접수방법 등은 시·군·구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2. 서류입증책임은 신청기관 장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기준은 상시 요건으로, 연도 중 신청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기관 심사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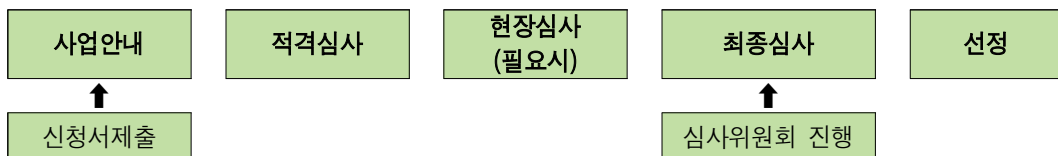
가. 심사절차

- 시·군·구는 적격심사→(필요시)현장심사→최종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장, 아동분야 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

※ 시·군·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시·도 통합운영 등)

- 심사절차 및 세부내용은 시·군·구의 추진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심사를 통해 아동복지교사 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한 후, 최종 지원분야 및 지원시간을 결정함
- 다만, 심사결과 발표는 선정 센터에 대한 지원여부를 먼저 발표한 후, 아동복지교사와 매칭이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지원분야 및 지원시간을 공지함
- 시·군·구는 공정한 심사운영을 위해 심사 관련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보관함

나. 세부심사방법

- 적격심사
 - 시·군·구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심사를 통해 기본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격]으로 결정
 - 다만, 이용아동수 또는 운영시간이 기본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필요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종 [적격/탈락] 여부를 결정
 - 시·군·구는 적격심사를 통과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교사 수 범위 내에서 균등 지원하되, 지원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일수를 조정하여 파견할 수 있음
 - 세부심사 시 심사기준은 표준안(예시)을 참고하되, 시·군·구는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할 수 있음(항목의 추가, 배점의 조정 등 가능)

< 참고자료 : 지역아동센터 세부심사기준 표준안(예시) >

항 목	세 부 내 용	심사배점	
세부심사 항목 (50점)	□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	5~10	기준 점수 내에서 자유 배점 (DB자료 활용 가능)
	□ 이용아동 수	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	5~10	
	□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0~20	

● 현장심사

- 시·군·구는 적격심사 중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 시설환경 파악, 지원필요성, 지원사업 수행의지 등을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최종심사

-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하며, 적격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정도를 최종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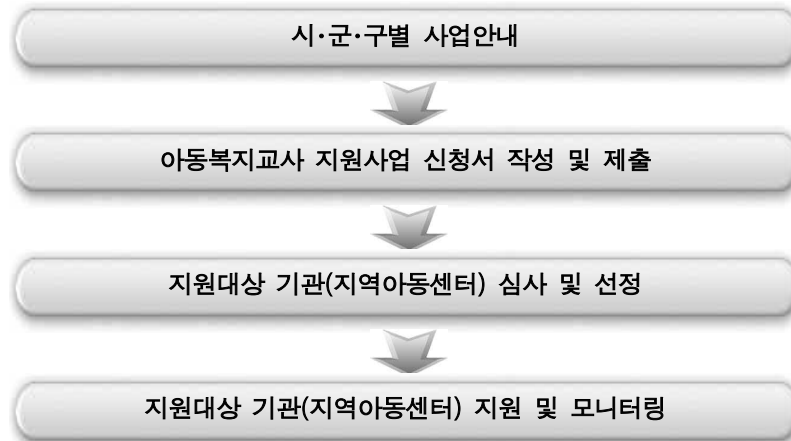
3. 아동복지교사 지원계획



가.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지원방법 :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 수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균등지원(주 5일 이내)
 -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결정에 대해 지원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 수 기준으로 균등하게 지원함(주 5일 이내)
 - 시·군·구는 지원시작일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함
다만, 파견인력 미채용 시에는 파견이 유보될 수 있음
 - 시·군·구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일수에 차이가 날 수는 있음
 - 1개 센터에 2명 이상의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할 경우 분야가 달라야 함
 - 1인 1센터 전담지원은 불가하며 2개소 이상 연계배치를 원칙으로 함.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 특성으로 인해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시간근무교사에 한하여 1개소 배치 가능

나. 지원절차



다. 지원내용 : 기본분야(아동지도 등 4개 분야)

구분	지원분야	활동내용	지원시간
기본 분야	아동지도	- 기초학습교육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 학교생활교육 (숙제 및 관계 지도, 준비물 지도) - 일상생활교육 (위생청결교육, 안전교육지도)	- 주 5일 이내 - 1일 5시간 지원 (09:00~21:00 사이) ※ 단시간(주12시간)근무 교사는 1일 5시간 이내 지원
	기초외국어	- 기초외국어지도 - 그룹외국어지도, 영어활동 프로그램 지도 * 외국어 영역: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지역별 수요가 있는 외국어 가능	
	독서지도	- 독서지도 (읽기, 말하기, 쓰기 등) - 그룹 독서지도, 독서활동 프로그램 지도	
	예체능활동	- 예체능활동 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 - 예체능*활동 프로그램 지도 * 음악, 미술, 바둑, 컴퓨터, 축구, 로봇과학, 연극, 서예, 손글씨, 한자, 댄스(무용), 요리 등 지역별 수요가 있는 분야 가능	

라.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또는 시설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복지교사는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할 수 없음. 다만, 지역적 특성 및 기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아동복지교사 선발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자체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가 중도 탈락할 경우에 대체할 교사를 파견함. 다만, 파견할 아동복지교사 결원 시에는 대체 인력 파견이 유보될 수 있음
- 시·군·구는 지원기간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변경에 따라 시설 폐지 후 신규시설로 신고된 경우, 지원종사자 및 이용아동의 변동이 없을 시에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음

4. 지원대상 기관 관리



가. 지역아동센터 역할 및 의무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의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간담회 등에 충실히 참여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의 의무교육 참석 및 연차사용을 위해 협조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 공간 및 교재준비, 교구·기자재 준비 등을 자부담으로 갖추어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지도점검) 등 시·군·구의 업무 요구에 협조하여야 함

- 아동복지교사 근무 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반드시 상근해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필요시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의 기본이력을 시·군·구에 요청할 수 있음
 -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에게 별도의 계약 및 이력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중단될 수 있음

나.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

- 지역아동센터가 본 사업에 대한 역할 및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사업 수행 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여 시·군·구로부터 최근 1년간 3회의 시정 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구분	시정권고사유
센터운영	① 지원기간 중 시설이 신청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아동복지교사의 활용에 필요한 공간이나 교구 및 기자재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교사관리	① 센터 내 종사자 없이 아동복지교사를 전담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 아동복지교사를 센터의 다른 사업 인력으로 활용한 경우 ③ 별도의 사유 없이 아동복지교사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④ 별도의 사유 없이 아동복지교사의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관계법령에 규정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⑤ 시·군·구와 협의 없이 교사의 근무시간 및 요일을 변경하는 경우 ⑥ 교사의 분야별 고유 업무가 아닌 센터 내 기타 업무(예 : 급식조리, 차량운행 등)를 요구한 경우 ⑦ 기타 시·군·구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지역아동센터에 다음과 같이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시정권고 절차 없이 즉시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①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및 거짓으로 심사에 응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예 : 운영시간, 아동수, 종사자수 등 실제 운영상황과 다른 경우 등)
 - ② 아동복지법·형법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 ③ 아동복지교사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센터에서 수령한 경우
 - ④ 본 사업 지침에 대한 심각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을 원할 경우
 - ⑥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를 거부한 경우
-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중단된 지역아동센터는 지원 중단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다음 연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 가능함
 - 다만,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를 거부하여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 중단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다음 연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 가능함

Ⅲ

아동복지교사 관리

1. 개요



● 근무유형 및 분야

- 전일근무(기본분야*) 및 단시간근무** 교사: 아동지도, 기초외국어, 독서지도, 예체능활동

* 주25시간제, ** 주12시간제

- 전일근무(특화분야*) 교사 :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기관 연계 등

* 주40시간제(지역사회복지사)

● 근무인원 : 3,550명('18년도 예산 기준)

- 시·군·구 총예산을 기준으로 채용 가능한 최대 인력 채용
- 시·군·구 기본급 차이를 고려하여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인력 배치
-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특성상 총원(시도별 배정인원)은 유지하되, 총원 외에 시군구 자체적으로 전일근무(기본·특화분야) 또는 단시간근무교사 추가 채용 가능

● 근무장소

- 시·군·구청 : 전일근무(특화분야) 교사
- 지역아동센터(파견) : 전일근무(기본분야) 및 단시간근무(주12시간) 교사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결원발생에 따른 신규 채용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 : 40%
- (취업취약계층 범위)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만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 모집공고 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을 명시하고, 선발 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선발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17.12, 관계부처 합동) 참조

● 계약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계약체결

- 정부 방침*에 따라 '17.7.20부터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관계부처 합동)

● 근무절차



● 파견원칙 : 기본분야 및 단시간제 교사에 한함

- 시군구가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키로 결정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원칙)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개 센터에

동일분야 2인 이상 배치 불가

- 1인 1센터 전담 배치 불가하며, 2개소 이상 연계 배치 원칙

※ 다만, 단시간근무교사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역특성(농산어촌 등) 등 2개소 이상 연계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소 배치 가능

- 아동복지교사의 친족이 운영하는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에 배치 불가

● 기타사항 : 전일근무(기본·특화분야) 교사의 경우 겸직할 수 없으나 단시간 근무 교사는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다만,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

2. 근무유형 및 분야



가. 전일근무(기본분야·특화분야) 교사 : 아동지도 등 5개 분야

구분	교사분야	활동내용	근무지 및 근무시간
기본분야 (주25시간)	아동지도	- 기초학습교육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 학교생활교육 (숙제 및 관계 지도, 준비물 지도) - 일상생활교육 (위생청결교육, 안전교육지도)	○ (근무지) 지역 아동센터 (파견) ○ (근무시간) 주5일, 1일 5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이내)
	기초외국어	- 기초영어지도 - 그룹 영어지도, 영어활동 프로그램 지도 - 기초외국어 지도 - 그룹외국어 지도, 외국어 활동프로그램 지도 등 *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지역 수요가 있는 외국어	
	독서지도	- 독서지도 (읽기, 말하기, 쓰기 등) - 그룹 독서지도, 독서활동 프로그램 지도	
	예체능 활동	- 예체능활동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 - 예체능활동 프로그램 지도	

구분	교사분야	활동내용	근무지 및 근무시간
특화분야 (지역사회 복지사)*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적합한 지역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등)으로의 연계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운영에 요구되는 실무 지원 - 드림스타트(아동통합사례관리사) 와 지역아동센터 연계된 업무 지원 ☞ 아동복지교사 노무·행정 관리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담당공무원이 전담	○ (근무지) 사군구 ○ (근무시간) 주5일, 1일8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이며, 근무시간에는 교육훈련시간(의무교육)이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전일근무(특화분야) 교사의 활동내용은 시·군·구별 지역 실정에 따라 상기 역할에 사례관리 업무 부여가능(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행복e음 사례관리 권한 신청 및 부여)

※ 지역사회복지사는 시군구청에 배치 근무하는 전일근무(특화분야)형태의 아동복지교사이임

나. 단시간근무 교사 : 아동지도 등 4개 분야

교사분야	활동내용	근무지 및 근무시간
아동지도	- 기초학습교육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 학교생활교육 (숙제 및 관계 지도, 준비물 지도) - 일상생활교육 (위생청결교육, 안전교육지도)	○ (근무지) 지역아동센터(파견) ○ (근무시간) 주12시간 (월 60시간 미만) (주 3~4일, 1일 5시간 이내)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달은 근무일 및 시간 조정
기초외국어	- 기초영어지도 - 그룹 영어지도, 영어활동 프로그램 지도 - 기초외국어 지도 - 그룹외국어 지도, 외국어 활동프로그램 지도 등 *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지역 수요가 있는 외국어	
독서지도	- 독서지도 (읽기, 말하기, 쓰기 등) - 그룹 독서지도, 독서활동 프로그램 지도	
예체능 활동	- 예체능활동 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 - 예체능활동 프로그램 지도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이며, 근무시간에는 교육훈련시간이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아동복지교사 채용 * 결원발생에 따른 신규 채용에 한함



가. 채용일정 및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채용공고	시·군·구별 자체 공고	
채용기간	수시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② (기본분야 응시자)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 자기소개서 (전일근무(특화분야)교사 응시자에 한함) ③ 최종학력증명서 ④ 자격증 사본 ⑤ 경력증명서 ⑥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⑦ 기타 사·군·구가 요구하는 서류 등 ※ ①~③는 모든 신청자가 제출, ④~⑦은 해당자만 제출
	채용 예정자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채용건강진단서) -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서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 ③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 채용예정자 제출 서류는 채용예정 발표 후 7일 이내 제출
접수처 및 접수방법	관할 사·군·구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	
행정사항	1. 채용일정, 세부절차 및 접수방법 등은 사·군·구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2. 서류입증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채용예정자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4. 응시자격은 상시 충족요건으로, 연도중 응시자격에 미달할 경우 근로계약이 중단될 수 있음	

[참고자료]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 신청자의 취약계층 해당여부는 사업수행기관이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

1)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2018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33,931	8,532	35,487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57,420	29,823	58,085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74,856	61,071	75,6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91,152	91,715	92,219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108,405	116,676	109,732

* 하단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한 금액임

2)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만20~만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3) 여성가장

구분	첨부서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4) 고령자(만 55세 이상)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5)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

6)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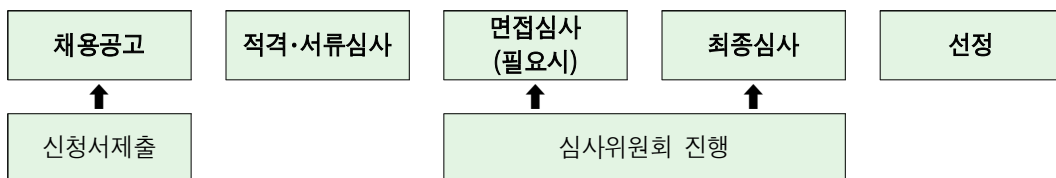
7) 결혼이주자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나. 채용심사

1) 심사절차

- 시·군·구는 공고 → 적격·서류심사 → 면접심사(필요시) → 최종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채용예정자를 선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면접 및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특성 상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와 연도중 결원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채용해야 하는 경우 시·군·구 자체기준에 따른 모집 가능
 -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장, 아동분야 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며, 시·군·구 상황에 따라 시·도 통합 운영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심사절차 및 세부일정은 시·군·구의 추진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시·군·구는 공정한 심사운영을 위해 심사 관련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보관함

2) 심사세부방법

- 적격·서류심사
 - 신청자의 기본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격/탈락]을 정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서류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 적격·서류심사 통과자를 정함
 - 적격·서류심사기준은 시·군·구별로 지역 특성 및 사업내용을 반영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하여 사용

- 표준안(예시)을 참고하되, 항목의 추가 및 일부 배점을 조정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아동복지교사 적격·서류심사기준 표준안(예시)]

항목		심사기준 및 방법		심사결과
적 격 심 사	공 통	연령	●만 19세 이상	적격기준 모두 충족할 경우 서류심사 진행
		실직상태	●근무시작일 기준 실직상태	
		전일근무 교사 (특화분야)	●응시자격에 적격	
서류 심사		학위(25점)	●응시분야와 관련된 학위소지자인 경우 높은 점수 부여	사군구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를 적격· 서류심사 통과자로 선정하고 필요 시 면접심사 실시
		자격증 (25점)	●응시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경우 높은 점수 부여	
		경력(20점)	●유사분야 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활동 경험 - 아동복지교사 등 아동지도 경험 - 지원 분야 관련 지도 경험	
		취업 취약계층 (3점)	●취업취약계층 해당자 점수 부여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6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취업취약계층 해당자 우대조건이 2개 항목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3점까지만 부여	
		프로그램 지도계획서 또는 자기소개서 (25점)	●프로그램 지도 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전 문성 등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 목적 및 목표 제시 여부, 달성 가능성 - 지도기간 및 회기의 적절성 - 지도방법 및 내용의 전문성, 구체성 정도 -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 아동에 대한 이해 정도 - 지원 분야의 전문지식 보유 여부 - 기대효과의 적절성 - 사업 참여에 대한 태도(성실성) 등 ●자기소개서 등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 및 적절성이 잘 나타날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 아동에 대한 이해 정도 - 지원 분야의 업무내용 및 목표 이해 정도 - 지원 분야의 전문지식 보유 여부 - 사업 참여에 대한 태도(성실성) 등	
		기타(2점)	●선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종합의견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면접 및 최종심사

- 적격·서류심사 과정에서 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최종심사를 진행함
- 면접 및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최종 선정 및 계약

- 최종심사를 통과한 채용예정자 명단은 지역아동센터 및 근무시간 매칭이 종결되는 시점에 개별연락 또는 홈페이지 게재로 발표
-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서 결과를 확인한 후 최종 채용자로 선정 계약함

3) 대기자 관리

- 시·군·구는 최종 채용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연도 중 결원 발생 시 대기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음

4)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의사항

- 아동복지교사 참여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작성 및 동의 여부 확인
- 참여 신청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
-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는 참여 신청자 모두 작성하여야 함
- 가구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는 취업취약계층 중 저소득층 참여 신청자인 경우에만 작성함
- 보유 목적이 사라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에 따른 보유·이용기간 종료 후 파기
- 퇴직한 아동복지교사의 경력증명 서류 발급을 위한 자료는 퇴직 후 3년간

보관하고, 기간 종료 후 파기

※ 3년 이상 보관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 보관

다. 응시자격

1) 공통 응시자격

-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
 - 가) 만 19세 이상으로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
 - 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 다)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2) 분야별 응시자격

- 전일근무(기본분야) 및 단시간근무 교사 : 분야별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 지도 가능한 자
- 전일근무(특화분야) 교사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우대사항

- (공통) 아동복지교사 선발 해당지역(시·군·구) 거주자 우대
 - ※ 거주자 여부는 시·군·구에서 조회하여 확인
- (취업취약계층)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우대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 (분야별 우대사항)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우대

분야	세부내용
아동지도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 지역아동센터 실무경력자 우대
기초외국어	•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외국어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독서지도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독서지도·예체능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
예체능활동	

마. 기타사항

- 주·야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참여 불가
(다만,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 불가
- 전일근무교사 겸직 불가, 단시간근무교사는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 참여는 불가
- 응시자의 친족이 운영하는 센터(대표자 또는 시설장)에 근무 불가

4. 아동복지교사 교육



가. 목적

- 아동복지교사에게 필요한 소양 및 분야별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실무능력을 강화하여 아동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탄력적인 근무유형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아동복지교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나. 운영계획 등 : 추후 통보

5. 아동복지교사 복무관리



가. 근로계약 체결

- 시·군·구에서 직접 정규직(무기계약)으로 근로계약 체결
- 정부방침*에 따라 '17.7.20일부터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관계부처 합동) 참조

나. 아동복지교사 역할 및 의무

- 아동복지교사는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보호, 교육, 문화, 복지 등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
- 아동복지교사는 사업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확대에 기여함
- 아동복지교사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지침,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아동복지교사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업무서류를 작성·보고하여야 함
- 아동복지교사는 모든 교육과정에 반드시 참여·이수하여야 함
- 아동복지교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지도점검) 등 시·군·구의 업무요구에 협조하여야 함

다. 복무규정

- 아동복지교사 휴일,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복무관련사항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등)에 따름

라. 아동복지교사 계약 해지

-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및 거짓된 내용이 확인된 경우
- 아동과 관련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침,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 아동복지교사 교육과정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경우
- 지역아동센터와 사전협의 없이 결근 또는 지각하는 등 불성실한 복무태도를 보이는 경우
-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의 학습지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업무자질 및 근무태도 등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와 갈등이 반복되어 교체 요구가 있거나 지역아동센터가 교사의 파견 지속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고유업무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속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규직(무기계약) 전환된 아동복지교사 계약 해지 등은 해당 시군구 복무규정에 따름

6. 예산 집행



가. 아동복지교사 급여

- 시·도는 총예산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아동복지교사 수를 적절하게 배정
 - * '18년 아동복지교사 1인 사업량 평균 단가: 115만원 수준
- 아동복지교사 근무유형에 따라 기본급이 다르므로 시·군·구별 아동복지교사 수를 준수 하는 범위에서 전일근무교사와 단시간근무교사 채용인원을 적절히 산출
- 아동복지교사 기본급은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것임

근무유형		근무분야	기본급	보험가입	퇴직금
전일 근무교사	기본분야	아동지도 기초외국어 독서지도 예체능활동	1,010,000원	사회보험 전체	지급 (기본급)
	특화분야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지역돌봄기관 연계 등	1,660,000원	사회보험 전체	지급 (기본급)
단시간 근무교사	기본분야	아동지도 기초외국어 독서지도 예체능활동	610,000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급하지 않음

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등 편성방법

- 아동복지교사 사업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편성·운영(다만,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 시·군·구는 해당 아동복지교사 수에 따라 매월 인건비를 책정·편성하며, 인건비는 기본급(사회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전일근무교사 퇴직금을 포함하는 총액을 기준으로 편성

- 예산 범위내에서 전일근무(특화분야) 교사의 출장 여비를 편성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개인별 연간 150만원
한도)
- 예산 범위 내에서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아동복지교사가 근무일정 조정이 어려워 사용하지 못한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원 가능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단시간근무 교사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므로 시·군·구는 예산 중 일부를 단시간근무교사의
건강검진비로 편성하여 연 1회 지급(실비정산 또는 급여로 일괄 지출)하여야 함
다만, 단시간근무교사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와 관련 일반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실시에 갈음되므로 사업주가 별도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 ※ 시·군·구별로 세부 단가를 파악하여 편성

다. 급여 지급방법

- 급여지급방법
 - 월별 근무상황부 및 업무일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시·군·구는 매월
말일까지 관련 자료를 확인 후 급여를 지급함
 - 월 급여액은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 연차유급휴가 등은 관계 법령(규정) 등에 따라 처리
 - 급여는 아동복지교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 다만, 본인이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인해 통장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에 대한)를 첨부 후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
- 급여 지급시기
 - 매 익월 5일에 지급함. 다만, 5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함

- 사회보험 관리

- 보험종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
- 시·군·구는 각 보험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을 파악하여 직접 신고
- 근무유형에 따라 각종 보험 가입여부와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문의 후 처리

* 관련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라.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 퇴직급여제도 운영 등 관련사항은 관계 법령(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름

7. 일모아시스템 등록



가. 일모아시스템 개요

- (개념) 일모아시스템이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행정 전산망을 말함
- (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사업 현황 체계적 관리
및 일자리사업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주요 기능) 참여자 등록, 취약계층 여부 확인 등 참여자 관리
- (사용 방법) 시스템 사용 매뉴얼(별첨) 참조

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체계

☐ 일자리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 일자리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 매년 사업 기초평가, 심층평가(사업당 3년 주기) 실시
- 매년 사업 현장 모니터링 실시(3~5회)
- 매년 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 평가 결과를 일자리 사업 예산편성에 활용

● 사업별 평가 등급*을 예산편성에 활용

* 종합 등급(A-E 5단계) 부여 → A등급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E등급은 원칙적 감액

다. 주요평가 내용

□ 기초평가

- (평가대상) : 전체 일자리사업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해당)
- (평가목적) :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사업별 성과등급의 기초자료
- (평가내용) : 수혜현황, 집행 효율성, 사업성과
- (평가방법) : '일모아시스템'상 DB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직접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 지표는 일모아시스템에 입력된 참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 심층평가

- (평가대상) : 전체 일자리사업 중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평가목적) : 사업개편 등 의견의 기초자료
- (평가내용) : 고용형태, 장기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추가 분석 등

라. 행정사항

-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직접일자리사업) 담당자가 일모아 시스템(고용노동부)*을 활용하여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인력 및 급여정보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시스템 활용 보고(분기별) : 보고주기 및 양식 추후 통보

- 향후 각종 대외 공개되는 통계 및 사업평가(예산반영) 등은 일모아 시스템 자료만 사용할 예정

* 직접일자리사업 담당공무원은 일모아시스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서식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 없습니다.
 년 월 일 시 설 장 (직인)
 ○○시·군·구 지자체장 귀하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신청서

★ 지역아동센터 신청서에 작성한 신청분야 3개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신청내용을 작성 바람

1순위 프로그램 신청	신청분야명			
	희망지원요일 (2~3일 범위에서☑체크)	☐ 월 ☐ 화 ☐ 수 ☐ 목 ☐ 금 주()일		
	프로그램 이용아동수	총()명	초1-3학년()명	중학생()명
			초4-6학년()명	고등학생()명
	신청분야 필요사유 및 희망업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립 공간 확보여부	☐ 유 ☐ 무		
	지도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확보여부	☐ 확보 ☐ 확보가능 ☐ 어려움		
2순위 프로그램 신청	신청분야명			
	희망지원요일 (2~3일 범위에서☑체크)	☐ 월 ☐ 화 ☐ 수 ☐ 목 ☐ 금 주()일		
	프로그램 이용아동수	총()명	초1-3학년()명	중학생()명
			초4-6학년()명	고등학생()명
	신청분야 필요사유 및 희망업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립 공간 확보여부	☐ 유 ☐ 무		
	지도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확보여부	☐ 확보 ☐ 확보가능 ☐ 어려움		
3순위 프로그램 신청	신청분야명			
	희망지원요일 (2~3일 범위에서☑체크)	☐ 월 ☐ 화 ☐ 수 ☐ 목 ☐ 금 주()일		
	프로그램 이용아동수	총()명	초1-3학년()명	중학생()명
			초4-6학년()명	고등학생()명
	신청분야 필요사유 및 희망업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립 공간 확보여부	☐ 유 ☐ 무		
	지도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확보여부	☐ 확보 ☐ 확보가능 ☐ 어려움		

<서식 2>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관 심사서식

적격·서류심사기준표(표준안)			
구분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기준
적격심사	신청지역위치	기본 적격 확인	신청지역에 위치
	개소시점		2016년 12월31일 이전 개소·운영 (공립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7년 12월31일 이전 개소·운영)
	법정종사자 인력기준		법정종사자 인력기준을 충족
	이용아동수 (10명이상)	적격 여부 및 필요 사유 확인	신고필증상에서나 실제 이용아동이 모두 10명 이상 (단, 적격하지 않더라도 필요사유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심사 가능)
	운영시간		1일 8시간 이상 운영 (단, 적격하지 않더라도 필요사유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심사 가능)
세부심사	운영일수 / 운영시간	5~10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이용아동수	5~10	지도대상 아동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	5~10	독립공간이 있고, 학습 교재·교구가 준비 되어 있을수록 높은 점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0~20	희망활동내용상 지원 욕구와 필요성, 교사 활용에 대한 정확한 운영 내용(시간, 요일, 활용기자재, 프로그램운영방법 등)이 서술되어 있을 수록 높은 점수

- ※ 심사표는 표준안을 사용하되, 시·군·구는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할 수 있음(항목의 추가, 배점의 조정 등 가능)
- 지역아동센터 기본사항 및 현장실사 사유 기재
 - 실사 항목 중 확인한 사항을 '확인사항'란에 기재
 - 현장실사 내용을 종합하여 종합 의견란에 기재하며, 최종심사 시 반영하여 지원여부 확정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신청기관(지역아동센터) 심사표(표준안)						
센 터 명					신청분야 (번호기재)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		담당자	이름	신고일 (신고필증)	
	(HP)			(HP)		서류완비여부
현장심사여부		☐ 필요 ☐ 불필요		실사일	방문자	
현장심사사유						
구분	항목	적격여부				
		적격	부적격			
적격 여부	①신청지역위치여부					
	②개소시점(2016.12.31이전)					
	③법정종사자 인력기준					
	④이용아동수(10명이상)			※ 부적격시 지원 필요성 명기		
	⑤8시간 이상 운영			※ 부적격시 지원 필요성 명기		
	최종결과	적격 / 탈락		※ 최종심사의견 명기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확인사항		
신청 분야 교사 항목	① 아동지도 ()순위	☐ 운영일수/운영시간(5~10)				
		☐ 이용아동 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프로그램 운영계획서(0~20)				
	총 점		점			
	② 기초외국어 ()순위	☐ 운영일수/운영시간(5~10)				
		☐ 이용아동 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프로그램 운영계획서(0~20)		
	총 점		점	
	③ 독서지도 ()순위	□ 운영일수/운영시간(5~10)		
		□ 이용아동 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프로그램 운영계획서(0~20)		
	총 점		점	
	④ 예체능활동 ()순위	□ 운영일수/운영시간(5~10)		
		□ 이용아동 수(5~10)		
		□ 환경 및 기자재 활용정도(5~10)		
□ 프로그램 운영계획서(0~20)				
총 점		점		
신청 순위	지원여부	신청분야	총점	
1순위	지원 / 미지원			
2순위	지원/ 미지원			
3순위	지원 / 미지원			
□ 종합 의견 :				

심사위원

(인)

○○시·군·구

<서식 3>

아동복지교사 참여신청서식

아동복지교사 참여신청서					접수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3×4)
주소						
핸드폰번호					수신동의 동의() 미동의()	
e-mail					수신동의 동의() 미동의()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 고령자(만 55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아동복지교사 참여경력(해당자)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최근 실적기간 (2018 신규교사해당)	년 개월
◆ 지원분야 : 지원 하고자 하는 교사 분야 3개에 ☑표를 하고, 희망 우선순위를(1·2·3순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의 근무 가능 시간대를 모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분야		우선 순위	근무유형			
			전일근무 (주25시간근무)		단시간근무 (주12시간근무)	
기본분야	아동지도	초등		☐		☐
		중·고등		☐		☐
	기초외국어	초등		☐		☐
		중·고등		☐		☐
	독서지도		☐			☐
	예체능활동 (분야)		☐		☐	
특화분야	지역사회복지사			☐		
◆ 학력사항(최종학력만 기재)						
기간		학교명	전공		졸업여부	
◆ 자격 및 면허						
자격증		취득연월일	발행기관		비고	
◆ 관련 경력사항						
기관명		기간	업무내용		비고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① 본 신청서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참여자의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시·군·구 지자체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심사, 계약 체결 및 대기자 관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 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조사·연구 포함)
-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자격,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및 확인 자료,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확인자료, 건강보험증번호, 아동 복지교사 참여경력, 최근 실직기간 등
-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동의함 / ☐ 동의안함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12개월

☐ 동의함 / ☐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동의함 / ☐ 동의안함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가구원의 경우 취업취약계층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동의 여부	서명
	신청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시·군·구 지자체장 귀하

기본분야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			
★ 지원분야와 관련한 프로그램 지도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계획을 상세히 기술 바랍니다(1분기 수업 또는 10차시 프로그램 기준) ★내용이 많을 경우 다음페이지로 넘겨 작성 가능			
지원분야(☑표기)	☐ 아동지도 ☐ 기초외국어 ☐ 독서지도 ☐ 예체능활동(분야)		
프로그램 제목	-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 - -		
프로그램 지도기간 및 회기	○월~○월(○개월) 또는 ○차시		
프로그램 지도가능대상	☐ 초등저학년 ☐ 초등고학년 ☐ 중학생 ☐ 고등 학생		
프로그램 지도계획	* 1분기 주별 또는 차시별 수업제목 및 지도방법 상세 기술		
	주별(차시)	수업제목	지도방법 및 내용
프로그램 기대효과			
프로그램 운영 자기 강점	* 간략한 자기 소개 및 프로그램 지도 관련 자기 강점을 상세 기술		